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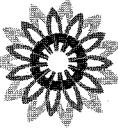
2001 중소기업 범위 해설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1966년부터 운영되어온 중소기업범위는 그동안 9차례 걸쳐 소폭적인 개편이 있었으나, 대부분이 중소기업의 종업원이나 자산증가에 따른 조정으로 근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지식기반산업과 서비스업의 확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경제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하고 새로운 산업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의 기본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 대하여도 전면적인 개편 2001년 1월 1일부로 개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중소기업 범위개편 요지

- ①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를 전면 개편하여 2001. 1. 1 부터 시행
- ② 중소기업 요건을 완화하고 복수기준중 택일제를 도입
 - ◇ 종전의 제조업·광업의 자산총액기준을 폐지
 - ◇ 상시근로자수 또는 자본금·매출액기준 중 어느 한 기준에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
 - * 제조·광업·건설·운수업 : 상시근로자수기준 또는 자본금기준
 - * 농업·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기준 또는 매출액기준
- ③ 152개 예외기준을 폐지하여 중소기업 기준을 대폭 단순화
 - ◇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의 종전 예외기준을 모두 폐지
 - ◇ 동일 산업에는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업종간 형평성 제고
- ④ 산업구조변화에 부응하도록 지식서비스업의 범위를 확대
 - ◇ 전자상거래업(20인→100인), 연구개발업(20인→50인), 서비스업 최저 기준(20인→30인)
- ⑤ 농업 등 1차산업에 대한 중소기업기준 신설
 - ◇ 기업형 사업체 증가 및 1차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⑥ 범위개편 효과
 - ◇ 제조·건설·광업·운수업의 중소기업수는 현행 수준
 - ◇ 서비스업 12,500개사, 1차산업 3,000개사 증가
 - ◇ 범위운영의 신축성 확보, 장기간 안정적인 기준 운영 가능



II. 중소기업 해당여부 확인절차

첫째 :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대상 여부 확인

- ◇ 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주 본인을 포함하여 1인 이상이 근무하는 모든 사업자
- ◇ 제외대상
 - 비영리 사업자(비영리 법인 · 단체)
 - 상시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인 사업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지정된 사업자(공정 거래위원회에서 지정)

둘째 : 주된 사업(주업종) 확정

- ◇ 동일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그 중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이 주업종
- ◇ 주업종이 정해지면 경영하는 업종에 상관없이 당해기업 전체의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산정하여 주업종의 중소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확인

셋째 :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기준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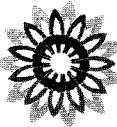
-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수 또는 자본금기준을 적용
- ◇ 여타 모든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기준을 적용
- ◇ 상시근로자수는 "미만"기준이고 자본금 · 매출액은 "이하"기준임에 유의
 - (예)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이라함은 299인까지를 의미하고 "자본금(또는 매출액) 80 억원"이라함은 80억원까지를 의미함.

넷째 :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인

- ◇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기준을 이미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지를 확인
 -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유예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와 다음 3년간
 - 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한 유예기간은 시행일부터 3년간(2001.1.1부터 2003.12.31)

※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의 합병하는 경우



- 유예기간 중(본문 및 부칙 유예기간)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창업 후 12월 이내에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
- 중소기업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확인제도〉

- ◇ 어느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해마다 달라 질 수 있으며, 중소기업 명단을 관리하는 기관은 없음
- ◇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이러한 중소기업 확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별도로 확인서 발급기관은 없음
- ◇ 일부 기관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여 업계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여 중소기업계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중소기업청 정책 총괄과로 연락 바람(전화 02-509-7033, 7034)

III. 중소기업범위 분야별 해설

1.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 대상

■ 관련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육성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所有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者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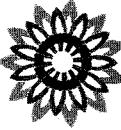
◇ 시행령 제3조 :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을 설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별표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 ·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4항 : 비영리 법인 ·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타 법



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음

■ 법 적용대상은 영리 사업자로 한정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범위의 적용 대상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개인사업자, 영리 특별법인 등

■ 비영리 법인·단체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없음

◇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일지라도 설립근거법령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한 사업자나 법인·단체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자가 될 수 없음(예: 의료법인)

* 비영리 법인이 고유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수익사업을 비영리법인 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없고, 별도의 법인이나 사업체를 설립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 할 수 있음

<비영리법인의 예>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

- 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단체, 국가유공자단체 등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의료보험조합, 한국보훈복지공단, 결핵협회 등

2. 비영리 법인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관련규정 : 법 제2조제4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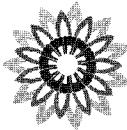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비롯한 비영리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으로 보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중소기업으로 규정하는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비영리법인·단체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음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범위를 달리 적용한 사례>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에서 비영리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없으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동 법에서 지원하는 시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중소기업에 포함
- * 중소기업은행법 제2조제2항
 -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자들의 단체를 중소기업자로 봄
-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에 포함

3. 창업기업에 대한 중소기업범위 적용

■ 관련규정

- ◇ 시행령 제2조제1호 : 창업일의 정의
- ◇ 시행령 제3조 : 중소기업의 범위
- ◇ 시행령 제5조제2호 : 창업기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요령
- ◇ 시행령 제6조제2항 : 창업기업의 자본금기준
- ◇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 : 창업기업의 매출액 산정 요령

■ 창업일을 소득세법 및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일로 각각 규정한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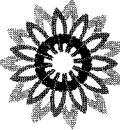
-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함

■ 창업기업에 중소기업 범위를 적용하게 되는 시점

-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 ◇ 개인사업자는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

〈유의할 점〉

- * 동 법이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된 사업에 따라 범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법인 설립등기를 하였어도 사업활동이 전혀 없고 사업을 위한 준비활동도 전혀 없어 서류상으로만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판단할 수 없어 중소기업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함
- * 주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비의 발주, 기계·장비의 주문 또는 설치, 원자재의 구입, 사업장 임차 등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활동을 하고 있거나 완료하여 주된 사업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함
- * 이러한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적용의 실익이 있다면 동 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임(창업지원법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창업중소



(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창업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월 이내에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바로 중소기업을 출업하게 됨

4. 합병기업에 대한 중소기업범위 적용

■ 관련규정

- ◇ 시행령 제2조제2호 : 합병일의 정의

-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 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등록일을 "합병일"로 함

- 합병기업의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창업기업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창업기업 관련 규정을 참고 바람
-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전과 기업규모가 현저히 차이가 나므로, 합병일 후부터는 새로운 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5.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 관련규정

- ◇ 시행령 제5조제1항 : 상시근로자의 정의 및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자

- ◇ 시행령 제5조제2항 : 상시근로자수 산정 요령

- ◇ "상시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함

① 일용근로자

②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③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중에서 산정하므로 근로자에 해당 여부는 노동부의 해석을 우선 적용하게 됨

* 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대표이사(사장) 및 법인등기부상의 이사와 감사는 근로자 범위에서 제외



- * 현실적으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에서 세무관서에 신고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 기재된 근로자수를 참고 할 수 있음
- * 파견근로자는 파견을 받는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파견을 한 업체에서 임금이 지급되고 소속 직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는 파견을 한 기업의 소속근로자로 봄
- * 실습생의 상시근로자 여부는 실습기간, 임금지급 유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함

■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 *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

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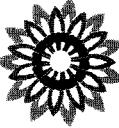
■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맺거나 또는 고용계약 없이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근로하는 자를 말함

 - 동일인이 3개월을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3월 이상의 근로자로 보아 상시 근로자로 봄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말하



며,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의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제출한 기업부설연구소신고서(동 규칙 별지 4호 서식)에 기재된 연구전담요원 또는 매년 확인을 받은 연구전담요원

*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과학기술처장관은 핵심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특정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음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기업부설연구소의 기준 등)

법 제8조의 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5인 이상(중소기업자가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의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신고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함

* 연구전담요원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경우 전문대학에서 자연계분야에 관한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의 기사2급 이상의 자격소지자로서 해당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자. 다만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분야는 자연계분야 여부를 불문

▣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다음 3가지 방법으로

①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월 이상인 기업(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월중 퇴사, 입사, 재입사 구분 없이 말일 현재 인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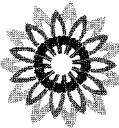
②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이상인 기업(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가목)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달까지 매월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③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미만인 기업(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나목)

- 창업일 ·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사업연도가 1월부터 12월말인 "갑"기업이 2000년 5월 12일 창업한 경우>



- * 2000년 12월에 산정 한다면 사업기간이 12개월이 되는 사업 연도를 갖지 못하므로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7로 나눈 인원
- * 2001년 8월에 산정 한다면 사업기간은 12개월이 지났으나 12개월이 되는 사업연도는 갖지 못하였으므로 2001년 7월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2000. 8월말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 2002년 1월부터는 ①번의 방법으로 산정 한 인원

6. 자본금의 산정

■ 관련규정

- ◇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 : 자본금의 정의,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에 대한 자본금 기준
 - 자본금을 주권상장기업, 주권비상장기업, 외부감사대상기업, 비외부감사대상기업, 창업·합병기업으로 구분 적용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코스닥등록법인)은 자본금에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보도록 함
- ◇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 외부감사대상기업의 자본금 기준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기준
 - * 2000. 12월 현재 주식회사 외부감사대상은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기업(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 ◇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자본금기준
 -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기업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사실상 자본총액에 해당) 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중 많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보도록 함
- ◇ 시행령 제6조제2항 :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자본금
 - 창업일 또는 합병일 현재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형태에 따른 자본금의 정의는 시행령 제6조제1항을 적용함
- 자본금기준은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에만적용하며, 일단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과다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함



■ 자본금은 기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적용

구 분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기 타
외부감사대상기업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에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비 외부감사대상	직전사업년도 말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또는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자본잉여금을 합한금액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또는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

* 주권상장법인은 주권(주식)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을 말하며(3부시장 법인은 주권 상장법인이 아님), 협회등록법인은 코스닥시장에 주권(주식)이 등록된 법인을 말함 이러한 기업은 일간경제신문이나 일간지의 주식시세표에 나오는 회사명을 보고 확인 가능

〈기업별 자본금의 유형〉

- * 주식회사 :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또는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출자금)
- * 개인사업자 :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또는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출자금)
- * 조합 및 특별법인 : 출자금 또는 기업회계기준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

■ 주권상장기업, 주권비상장기업 차등 적용 사유

◇ 중소기업에 남기 위해 자본금 증자를 회피하는 문제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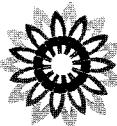
-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주식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 한다.

-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제1항의 기준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은 기업회계와 감사인의 감독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기업회계기준 제29조(자본금)

-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등으로 분류한다.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및 발행한 주식의 수와 당해 회계연도 중에 증자, 감자, 주식배당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본금이 변동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상장법인·비상장법인·주권상장법인·주권비상장법인)

- 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발행인
 - 비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발행인
 - 주권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 주권비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을 발행한 법인
- * 증권거래법 제2조제15항 : 이 법에서 "협회등록법인"이라 함은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등록한 법인을 말함

7. 매출액의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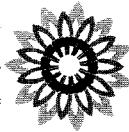
■ 관련규정

◇ 시행령 제7조제1항 : 매출액의 기준

- "매출액"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을 말함

◇ 시행령 제7조 제2항 : 매출액 산정 방법

- ①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 ②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개월 이상이지만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정월 전월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 ③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은 창업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월 전월까지 매출액의 합계액을 해당월수로 나누어 12를 곱한 금액
- ④ 산정일이 창업한 달 또는 합병한 달에 속하거나 창업 또는 합병한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산



정일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창업 또는 합병일부터 산정일 까지의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

■ 상시근로자수기준을 초과할 때 매출액기준을 적용하면 편리

◇ 상시근로자수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매출액기준을 초과하여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기준을 초과하는 기업만 매출액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편리함

■ 모든 기업은 세법에 따라 회계장부 비치 의무가 있으므로,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기업은 회계장부를 기준으로 매출액의 산정이 가능

◇ 손익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손익 계산서가 없거나 손익계산서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장부 매출액 또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확인한 회계장부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할 수 있음(손익계산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 · 기장)

-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 · 관리하여야 함
-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도 위의 장부로 봄
- 부동산소득 · 사업소득 · 산림소득 중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 별로 구분 처리하여야 함

* 법인세법 제112조(장부의 비치 · 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 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 · 보존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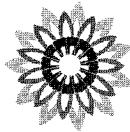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기장)

-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함
- 부가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뿐만 아니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사실도 구분하여 장부에 기재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내용)

- 공급 품목, 공급가액, 매출세액, 공급시기 등
- 법인세법 제11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로 갈음할 수 있음(제4항)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동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납부세액, 환급세액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함(예정신고)
 - 제1분기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
 - 제2분기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
- *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 사업자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납부세액,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확정신고)

■ 매출액산정 방법

①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시행령제7조제2항제1호)

- 직전 사업연도 12개월의 매출액

②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이상이지만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이 되지 못하는 기업(제7조제2항제2호가목)

◇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예> 2000. 3월에 창업한 기업으로 12월말 결산을 하는 기업의 2001. 6월 현재 매출액 산정 방법

* 2001년 5월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2000년 6월 매출액까지를 합한 금액, 2001년 9월에 산정하는 경우에는 2001년 8월부터 2000년 9월까지 매출액을 합한 금액

③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제7조제2항제2호나목 전단)

창업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월 전월까지의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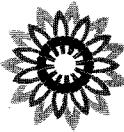
④ 산정일이 창업 또는 합병한 달에 속하거나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산정 일까지의 기간이 1월에 미달하는 경우(제7조제2항제2호나목 단서)

◇ 창업 또는 합병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일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일수로 나누어 365를 곱한 금액

<예> 2000. 3.14에 창업 · 합병한 기업을 2000.4.29에 매출액을 산정하는 방법

* 2000. 3.14부터 2000. 4.28까지 46일간의 매출액을 합하여 46으로 나누어 1일 평균매출액을 구하고 그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동 기업의 매출액이 됨, 2000. 5. 1에는 1월 이상이 되는 4월 한달 매출액에 12를 곱한 금액

8. 주업종의 판정



■ 관련규정 : 시행령 제4조(주된 사업의 기준)

◇ 하나의 기업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 시행령 제3조제1호를 보면, 별표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그 규모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으로 규정하여, 주된 사업에 따라 범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주업종이 정해지면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고, 당해 기업 전체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함

◇ 주업종의 상시근로자수나 자본금 또는 매출액만 적용하는 것이 아님

9. 중소기업 유예기간 부여

■ 관련규정

◇ 법 제2조제3항 : 유예기간 부여 및 배제 기업

◇ 시행령 제9조 : 유예기간 배제 기업

◇ 시행령 부칙제2항 : 경과조치에 의한 유예기간

■ 유예기간

◇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규모의 확대나 중소기업 기준의 변경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즉시 지원을 중단하면 당해 기업의 경영안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일정기간을 중소기업으로 보아 지원하는 기간을 말함

■ 유예기간의 종류

◇ 유예기간은 다음과 같이 2개로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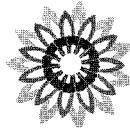
①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 기업의 규모 확대등에 의한 유예기간

*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규모의 확대, 업종의 변경, 다른 중소기업과의 합병, 업종의 추가 등으로 시행령 별표의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당해 연도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다음 3년간은 유예기간을 부여함

② 시행령 부칙 제2항 : 경과조치에 의한 유예기간

-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제1호(별표 1, 2)의 기준에 의해 중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된 시행령 제3조제1호(별표)의 기준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령의 시행일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봄(2001.1.1부터 2003.12.31까지)

▣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대기업)과 합병하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법 제2조 제3항 단서)
 -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잔여 유예 기간을 상실
- ②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유예기간 또는 부칙 제2항에 의한 유예기간이 모두 해당)과 합병하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시행령 제9조 제1호)
 - 12월 이내의 어느 시점에서든지 중소기업을 초과하여도 유예기간 없이 바로 중소기업을 졸업
 - 12월이 되는 시점에서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유예기간 없이 바로 중소기업을 졸업
- ③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시행령 제3조 제1호(별표)의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시행령 제9조 제2호)
 - 12월 이내의 어느 시점에서든지 중소기업을 초과하여도 유예기간 없이 바로 중소기업을 졸업
- ④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지정된 경우(시행령 제9조 제3호)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수 기준(제2조관련)

(단위 : 명)

표준산업분류	해 당 업 종	상시근로자수
21021	골판지 제조업	400